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업무편람

<점포철거비 지원>

2025. 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 편람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세부운영을 위해 지원정책 정보 및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 서식을 포함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시 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개 요	1
II.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4
◆ 「철거예정자」 및 「기 철거자」 세부 지원절차	4
1. 신청서류(1차) 제출 · 접수	6
2. 신청서류(1차) 검토 및 보완	7
3. 점포철거 진행	8
4. 정산서류(2차) 제출	9
5. 정산서류(2차) 검토 및 보완	10
6. 승인 및 비용지급	11
7. 현장점검	12
8. 유의사항	12
[참고1]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13
[참고2]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14
[참고3] 상시 근로자 수 산정	15
[참고4] 평균 매출액 산정	17
[참고5]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제재기준	18
[서 식] 서식모음	19

I. 개요

□ (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철거, 원상복구) 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①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참고1] 확인)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폐업 예정)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②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 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신청일
- ③ **임차계약(유상임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참여제한)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 ※ 법인과 법인 대표가 임대차 관계일 경우에도 지원 불가
② 기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③ 주거용도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확인되는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가설건축물(건축물로서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④ 유사사업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⑤ 사업장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⑥ 제외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참고2] 확인)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1년)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부가세 제외)

□ (지급한도 및 기준) 지원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도 내에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함

○ (지급한도) 폐업일('25년 7월 11일)에 따라 지원한도 상이*

* '25년 2차 추경 관련 개편 사항

- (7월 11일 전 폐업자) 전용면적 1평(3.3m²)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로 지원

- (7월 11일 이후 폐업자) 전용면적 1평(3.3m²)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 * '25년 7월 11일 폐업자 포함

※ 전용면적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처리하여 산정 (예) 57m²→ 17.3평 → 18평

○ (지급기준) 위 지급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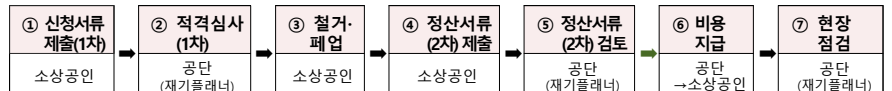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부가세는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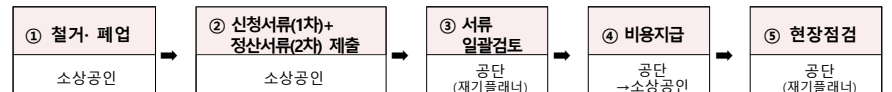
□ 지원절차

○ 아직 철거·폐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1차) 우선 제출', 기 철거·폐업자의 경우 '신청서류(1차) + 정산서류(2차)' 한 번에 제출

- (철거 예정자) 신청서류(1차) 제출 → 적격심사 → 정산서류(2차) 제출 → 검토완료



- (기 철거자) 신청서류(1차) + 정산서류(2차) 일괄 제출 → 검토완료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번, ②번)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③번, ④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등의 시 제출 생략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④ 소상공인 증명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신청 서류 <small>1차 제출 서류</small>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날인(서명) 명시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후 제출
	② 건축물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상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발급처]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 가설건축물(건물로서의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③ 영업신고증(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출 [발급처]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정산 서류 <small>2차 제출 서류</small>	① 폐업사실증명원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린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규정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② 공사내역서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받는 자(신청인), 공급자(철거업체) 정보·날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 “이체확인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발급처] 은행 발급분 또는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 단순 거래내역(적요 또는 메모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 캡처분 인정불가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발급처]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부득이한 사유(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로 본인 계좌를 통한 수급이 어려운 경우 직계가족(배우자) 계좌로 지급 가능 (“타인계좌(직계가족) 수급 관련 서식(홈페이지 자료실)” 첨부)
	⑤ 통장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단,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부득이한 사유(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로 본인 계좌를 통한 수급이 어려운 경우 직계가족(배우자) 계좌로 지급 가능 (“타인계좌(직계가족) 수급 관련 서식(홈페이지 자료실)” 첨부)
	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거 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 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 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 여부 판단

Ⅱ.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 「철거 예정자」 세부 지원절차



◆ 「기 철거자」 세부 지원절차



1 신청서류(1차) 제출 · 접수

- (신청방법) 신청인은 점포철거비 지원 체크리스트[별지3]를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자가 체크한 후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접수처)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 원스톱폐업지원
-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여야 함
 -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대리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必)
 -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림처리 후 제출해야하며, 신청일 기준 6개월(180일) 이내 발급분을 인정함
-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별지4]* 제출**로 대표 1인이 신청
- (담당자 배정) 공단은 신청 완료된 접수내역에 대하여 담당자(재기플래너)를 배정함
- (접수확인) 접수 완료 후 마이페이지(My Page)-“점포철거비지원” 메뉴에서 신청 목록의 진행상태 “**담당자배정완료**” 상태 확인
 - * “신청 중”은 완료된 것이 아니며, [임시저장] 버튼 클릭 후 생성되는 [완료] 버튼 반드시 클릭

< 점포철거비 신청서류(1차) >

	구 분	세 부 내 용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임대면적, 날인(서명)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인 경우는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건축물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상 점포가 아닌 주거목적 공간은 불인정 - 단,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상업시설로의 이용 확인 시 지원 가능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cloud.eais.go.kr)에서 발급 ** 겸용주택(주택 및 기타용도 혼재)은 검토 후 판단 *** 건축물대장 발급 불가 시 해당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 제출 • 가설건축물(건물로서의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③ 영업신고증(공단 요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출

	구 분	세 부 내 용
행망 서류 ▼ 공단 확인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행망동의 시 미제출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행망동의 시 미제출 (간이과세자) 미제출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동의 시 미제출 •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인 경우 ④번 함께 제출
	④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공단 요청시 신청인이 별도 제출)	• 고지인원 확인 후 인정 * [참고3]의 산정기간에 따라 제출 *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집수 포털(si4n.nhis.or.kr)-[사업장 주요 서비스]-[보험료산출내 역조회]-전체보험 선택 및 고지년도 입력-[출력하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www.hometax.go.kr)-My 홈택스-신고 원천세 목록조회-기간입력-보기 순으로 조회

2] 신청서류(1차) 검토 및 보완

- (서류검토) 담당자는 행망서류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1차)를 검토
 - 담당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사용기간, 유상임차(월세·전세 등) 여부 등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함
 -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에 신청한 경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소재지가 일치하는 과거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를 증빙하는 사실 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사실증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보완요청) 행망서류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요청에

- 응해야 함 (재신청 가능)
 - 공단의 서류 보완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됨 (재신청 가능)
- (검토완료) 담당자는 행망서류와 신청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 서류 검토완료” 처리함

1)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면적 결정 방법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판단
-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이 불확실한 경우(약00평, 공용면적 포함 표기 등),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판단
-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불확실한 경우(건물 전체면적 표기 등),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으로 판단
②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모두 불확실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을 비교하여 작은 면적으로 판단
- 필요시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면적 기재 요청 및 영업신고증 제출 요청

2) 매출액 신고이력이 없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류 제출 방법

< 4가지 경우 중 택1하여 제출 >
① 매출액 신고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② 폐업자인 경우, 일반(간이)과세자는 폐업 시 다음달 25일까지 매출액 신고 가능 → 신고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에만 신고 가능하여 위 방법 불가
③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또는 중소기업24)에서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후 제출 * 폐업상태의 경우 발급 불가
④ 사업장의 카드단말기 매출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함께 제출 * 카드단말기 매출내역 조회: 홈택스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또는 여신금융협회 누리집 - [월별 매입내역 조회] ** 현금영수증 발행분 조회: 홈택스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3] 점포철거 진행

- (철거업체 지정) 철거업체는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진행 하며, 공단은 철거업체 선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
- 자력 철거 및 사업자 미등록 철거업체를 통한 진행은 불인정
- (철거 범위) 사업장 전체 철거, 부분 철거 모두 가능하나, 철거할

물품을 양도하여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철거 비용을 철거업체에 **현찰로 지불하여 이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 완료한 현금영수증 제출 시 인정)
- 사업장에서 사용한 **임차자산(에어컨, 정수기 등)의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지원 불가**

4 정산서류(2차) 제출

- **(정산서류 요청)** “신청서류 검토완료” 처리된 신청인에게는 아래의 정산서류(2차) 제출 안내 문자가 발송됨
- 신청인은 정산서류 제출 안내 문자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됨 (재신청 가능)

< 점포철거비 정산서류(2차) >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폐업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② 공사내역서(견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내역별 소요비용 및 총 금액 기재 (신청인이 철거업체에 요청) * 내역서 상 공급자(철거업체)·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되어야 함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종이(수기)세금계산서 불인정 * 단, 세무서 직인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통지서(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출 시 인정 • 폐업상태인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요청 • 철거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전표 제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철거를 진행한 경우, 본사에서 신청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도 인정
④ 이체확인증 또는	

구 분	세 부 내 용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업체 계좌로 철거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 필수포함 내용: 이체금액, 이체일시, 수취인 성함(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수취인이 철거업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철거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을 증빙하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후 제출 / 본인 명의 카드에 한해 인정 • 현금거래 불인정 * 무통장입금의 경우, 위 '필수포함 내용'이 기재된 입금확인증 제출 시 인정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철거를 진행한 경우, 본사에서 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로 대체 가능 * 정산내역서 상 철거원상복구 항목에 대한 비용 공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⑤ 통장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부득이한 사유(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로 본인 계좌를 통한 수급이 어려운 경우 직계가족(배우자) 계좌로 지급 희망 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추가 서류(12페이지)” 함께 제출 ※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 불가
⑥ 철거 전·후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여부(내용) 확인을 위한 사업장의 철거 전, 후 내·외부 사진 • 철거 후 공실 상태의 사진 제출 * 타 업체가 이미 입점한 경우, 철거 전 사진과 타 업체 입점 사진 비교확인 후 판단

5 정산서류(2차) 검토 및 보완

- **(폐업여부 확인)** 신청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에 대해 실제 폐업여부 확인 후, 폐업하지 않은 경우 지원취소 또는 사후 환수할 수 있음
- **(서류확인)**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의 공급자명(철거업체명)·공급 받는자명(신청인)은 모두 일치하여야 함
- **(이체확인증)** 명시된 금액이 전자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고, 수취인이 철거업체로 확인되면 인정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금액이 카드전표와 일치하고, 카드소유주가 신청인, 가맹점 정보가 철거업체로 확인되면 인정

- **(보완요청)** 정산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요청에 응해야 함
- 공단의 서류 보완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됨 (재신청 가능)

6 승인 및 비용지급

- **(승인완료)** 정산서류(2차)에 이상이 없을 시 공단은 “정산서류 검토 완료” 처리하며, 지원금액 최종 검토 후 “승인완료” 처리
- **(비용지급)** 지원금은 **전용면적 1평(3.3m²)당 20만원 이내, 최대한도 내에서 실제 공사 소요 비용으로 지급***하며,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함
 - * 신청인이 제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원칙)**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함
- **(예외)** 부득이한 상황으로(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등) 본인 계좌를 통한 수급이 어려울 경우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지급 허용
 - 상기 내용 중 ‘타인’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인에 한함
 - 타인 명의 계좌 신청인은 아래의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추가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추가 서류 >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별지5] 직접 작성
2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별지6] 직접 작성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
4	타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타인명의 계좌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7] 직접 작성
6	신용평가보고서 등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관련 증빙 1부	신용평가기관 등 발급

-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에게 본인 계좌 이용에 동의한 사실 및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작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지급제한)** 해당 사업자(신청인)가 **지원제의 대상** ([참고2])으로 확인되면 **지급보류 및 강제 취소**할 수 있음
-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이후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7 현장점검

- 공단은 지원금 수혜 사업장의 소재지에 사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침위반(동일장소 3년 이내 재창업, 철거공사 미실시 등) 여부를 확인**함
- 현장점검 결과 지침위반 의심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해야 함
-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단은 보조금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과 **중복신청·지급**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지급 취소** 또는 보조금법에 따라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정산서류검토완료’ 후에는 지원금 지급 계좌 변경이 제한되며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재기플래너를 통해 ‘정산서류반려’ 요청 후 재접수 필요
- 단, ‘승인완료’ 단계 이후에는 지급 계좌 변경이 불가할 수 있음

<참고1> 소상공인 기준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2>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유타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유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작장애인인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희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희주점업(562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용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용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희주점업(56211), 무도유희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참고3> 상시근로자 수 산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예시 ①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예시 ②
	창업·합병·분할로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예시 ③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사업 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2. 11. 20	'24. 6. 23	(직전 사업연도) '23년 1월~'23년 12월
예시2	'23. 3. 5		(최근 12개월) '23년 6월~'24년 5월
예시3	'24. 1. 20		(개업일~최근) '24년 1월~'24년 5월

<참고4> 평균 매출액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예시 ㉑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예시 ㉒, ㉓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예시 ㉔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예시 ㉕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사업 신청일	평균 매출액 산정기간
예시1	'20. 8. 20	'24. 6. 23	(직전 3개 사업연도) '21년 1월~'23년 12월
예시2	'21. 3. 5		(직전 2개 사업연도) '22년 1월~'23년 12월
예시3	'22. 3. 5		(직전 사업연도) '23년 1월~'23년 12월
예시4	'23. 3. 5		(최근 12개월) '23년 6월~'24년 5월
예시5	'24. 1. 20		(개업일의 익월~최근) '24년 2월~'24년 5월

<참고5>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제재기준

【 점포철거비 제재기준 】

구분	세 부 내 용	세부조치
환수 또는 취소	자가 건물, 무상 임차, 유사사업 수혜자 등 동 사업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함에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신청 및 정산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전액 환수
	철거업체, 컨설턴트 등과 결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현장점검을 통해 지침 위반 사항(동일 장소 3년 이내 재창업, 철거 공사 미실시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전액 또는 해당액 환수
	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과 중복신청·지급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 본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진 반납 또는 규정 위반에 의해 강제 환수된 경우 재참여 불가

※ 사업비 환수가 결정되는 경우 사업 참여자는 통보받은 즉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서식모음

구분	서식명칭	페이지
별지 1 서식	점포철거비지원 신청서	20
별지 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스톱폐업지원용)	21
별지 3 서식	점포철거비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24
별지 4 서식	공동대표 위임장	25
별지 5 서식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용]	26
별지 6 서식	계좌 이용 동의서 및 약약서 [희망계좌 명의인용]	27
별지 7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희망계좌 명의인용]	28
별지 8 서식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사업비 반납 약약서	29

<별지 1> 점포철거비지원 신청서

점포철거비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민 등 록 번 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필수	성 별	
자 택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번 호	
자 택 주 소		E - m a i l	

2. 신청인의 사업단계(각 1개 항목만 선택)

사 업 단 계	<input type="checkbox"/> 폐업예정자	<input type="checkbox"/> 기 폐업자
---------	--------------------------------	--------------------------------

3. 성실상환자 여부

성실상환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

4 사업장 현황

업 체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번 호	
아 이 템	<검색으로 입력가능>	업 종	(대분류) / (중분류) * 아이템 선택시 자동입력
종 업 원 수	(가족종사자) (명)	개 업 일	년 월 일
	(고용인원) (명)	폐 업 일	년 월 일
매출액(연)	만원		
점 포	면 적 (㎡)	입 지 구 분	
	월 관리비	권 리 금	만원
	소 유	자 가 (구입금액)	만원
임 차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4. 점포철거지원 요청사항

철거여부	<input type="checkbox"/> 기 철거	<input type="checkbox"/> 철거예정
신청사유	◦ 현재 신청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수록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스톱폐업지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원스톱 폐업지원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지원,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원활한 지원 목적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점포 자가여부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포함)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성별·연령별·지역별 현황 분석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점포 자가여부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제공받는 자	국세청
제공 목적	세무분야 컨설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폐업자 멘토링 연계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제공받는 자	서울금융복지센터
제공 목적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제공받는 자	<p>법률에 따라 조사·연구·교육·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는 공공기관(구체적 기관명은 ALIO에서 확인 가능)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주하는 연구 용역계약의 상대방</p> <p>* 일반경쟁입찰 등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3자(계약 상대방)이 정해지므로, 본 동의 시점에 제3자를 특정하기 곤란</p>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지원 성과를 평가하거나,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포함)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별·연령별·지역별 현황 분석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점포 자가여부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제공받는 자	<p>「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인증분류체계상 “기타자유업”(9999)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주하는 소상공인 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포함) 업무 보조 용역계약의 상대방</p> <p>* 일반경쟁입찰 등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3자(계약 상대방)이 정해지므로, 본 동의 시점에 제3자를 특정하기 곤란</p>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재기지원 관련 문의·민원에 대한 신속 응대 및 재기 정보 제공·안내 원스톱폐업지원 서류 확인 관련 서류 검토, 보완 요청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점포 자가여부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포함)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성별·연령별·지역별 현황 분석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법령상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호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포함)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성별·연령별·지역별 현황 분석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 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법령상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호

3.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수집·이용 목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원활한 지원 관련,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의 행정정보를 열람·이용
항목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	<p>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따라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조회를 목적으로 처리됩니다.</p> <p>- 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및 지원 관련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p>
위와 같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3> 점포철거비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점포철거비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점포철거비지원 자가 체크리스트’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체크리스트입니다.
 ※ 아래 체크리스트 1-1~4번 및 9~10번 문항에서 “아니오”, 5-8번 문항에서 “예”를 선택할 시 신청 불가능

지원대상 확인내용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점포철거비 신청일 기준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 (폐업예정자) “예” / (기 폐업자) “아니오” ** 점포철거비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수로 제출되어야 지원가능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기 폐업자인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입니까? * 폐업예정자인 경우에도 “예” 체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점포철거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입니까? * (폐업예정자) 개업연월일~사업신청일 / (기 폐업자) 개업연월일~폐업일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점포철거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까? - 주된 사업의 평균매출액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공고문 별첨1) 이하이며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무상임차인 경우 지원 불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까? *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불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제외 업종에 해당합니까? * ①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의 경우 지원 불가 ②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공고문 별첨2)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부동산 등)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기타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 신청인(대표자)은 사업 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애 1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점포철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합니까? * 폐업을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 지원 불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체크리스트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까? * 사업 신청 전, 공고문에 대한 내용(지원 및 제외대상,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허위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① 제출서류 위·변조, 철거공사 과대견적, 제3자(브로커)의 부당개입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②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③ 공단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이 취소되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국고로 환수 조치하는데 동의합니다. 그 외, 이와 관련된 법률 및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사항 발견 시 중소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약약서

1.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인(신청인 성함)이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 성함)에게 지급될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성함)에게 전해 줄 것을 약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 및 약약자 : 희망계좌 명의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점포철거비 지원금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희망계좌 명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하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계좌번호 및 은행명, 성명(예금주), 생년월일, 연락처,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인과의 관계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금의 타인명의 계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희망계좌 명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8>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지원금 반납 협약서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지원금 반납 협약서

1. 본인은 ____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으로서, 일신상의 이유로 신청사업장의 폐업 신고를 철회합니다. 이에, 지원받은 점포철거 지원금 전액을 국고로 자진 반납합니다.

※지원금 지급이력:

2. 지급받은 지원금을 국고로 반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지원금을 반납하기에 향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받았습니다.

3.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및 지원사업 운영지침과 위 내용에 위반되는 사항 발견 시, 이에 수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협약합니다.

점포철거 지원금 반납계좌: OO은행 000-000-000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 년 월 일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정보>

신청인(대표자) : (서명 / 인)
사업장 상호명 : (서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명 / 인)